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2022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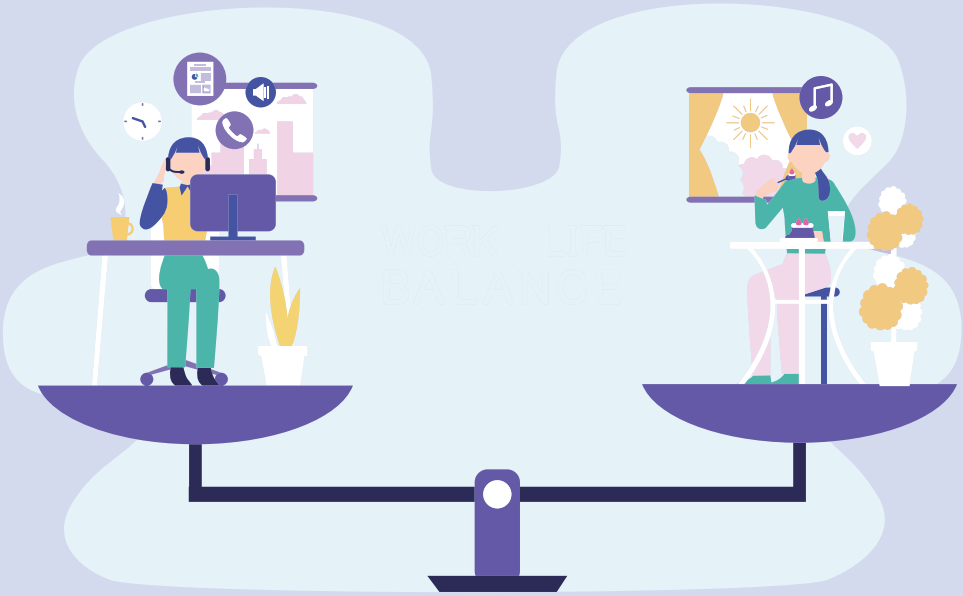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이 보고서는「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 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상황을 당진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당진시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당진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당진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함께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3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규정의 절차에 따라 위촉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2022년 1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9조에서 근거하여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당진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옴부즈만(Ombudsman)으로서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보호제도"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 구제 기능을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소송, 행정심판과는 다르게 시민의 경제적 부담 없이, 높은 접근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조정관, 호민관, 시민감사옴부즈만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아직 초기여서 시민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년 8월 기준으로 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충청남도에서 아산시와 공주시에 이어 3번째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제도운영의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앞으로 다양한 홍보강화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 기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총 30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였고, 특별히 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당진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실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에 대하여 시민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담과 조사처리 과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공표합니다.

언제든지 고충민원조정관실(당진시청 2층)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12. 31.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송창석

CONTENTS | 목차

1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 운영 | 1

1 고충민원조정관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3
2 고충민원조정관 소개 | 5
3 고충민원조정관 기능 | 6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 7
5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홍보 | 13

2 고충민원조정관 활동현황 | 21

1 고충민원조정관 이동신문고 운영 | 23
2 고충민원 현장 방문 활동 | 28
3 국민권익위원회 협력 활동 | 30

3

고충민원 처리결과 | 33

1 2022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35
2 제도개선 권고 사례 | 37
3 심의종결 사례 | 40
4 절차안내 사례 | 50
5 이송 사례 | 55

4

부록 | 57

1 보도자료 | 59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61
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7
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73
5 당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76
6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 80

I.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운영

1 고충민원조정관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고충민원조정관 소개

3 고충민원조정관 기능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5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홍보

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운영

1 고충민원조정관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

○ 고충민원조정관이란?

행정의 복잡 · 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 ·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 의견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도입배경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시민의 권리 침해, 불편, 부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진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부작위 포함)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의 법적 근거

고충민원조정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4조(활동비 지원),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사무기구),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 관계),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91조(과태료)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와 행정 제도개선 등의 역할 수행

○ 추진경과

- 2020. 8. 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 운영 계획 수립
- 2020. 8. 10.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 2020. 8. 10. ~ 2020. 8. 30.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0. 12. 13. 시의회 동의
- 2020. 12. 30.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21. 5. 25. 위촉동의안 사전보고(당진시의회 임시회)
- 2021. 6. 7. ~ 6. 29. 위촉동의안 상정(제83회 제1차 정례회)
- 2021. 8. 30. ~ 9. 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공개 모집 공고
- 2022. 1. 3 고충민원조정관실 개소 및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2 고충민원조정관 소개

□ 당진시 제1대 고충민원조정관(2022. 1. 3. ~ 현재)

고충민원조정관 송창석

- **위 촉 일:** 2022. 1. 3.
- **위촉기간:** 2022. 1. 3. ~ 2023. 12. 13.
- **임　　기:** 2년
- **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행정학박사(1993년)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 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
  - 전 경기도 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

※ 고충민원조정관 사무기구 : 감사법무담당관(조사팀) / 지원인력(공무원) 2명

3 고충민원조정관 기능

□ 주요기능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
- 다수인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조정 처리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의 장점

행정의 복잡 · 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 ·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의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고충민원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정의

- 당진시(시 출자·출연 공기업, 출연기관 등 소속기관 포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e-mail 신청

↓

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 소관여부 판단, 부적정 민원은 해당 부서 이첩

↓

조사 실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

고충민원조정관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조정관의 조사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

◦ 신청인, 피신청인(관계기관)에 통지

□ 고충민원 신청

● 방문접수, 팩스, 우편: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2층 (고충민원조정관실)

- 전화상담: 041) 350-3173, 3174

※ 신청서 서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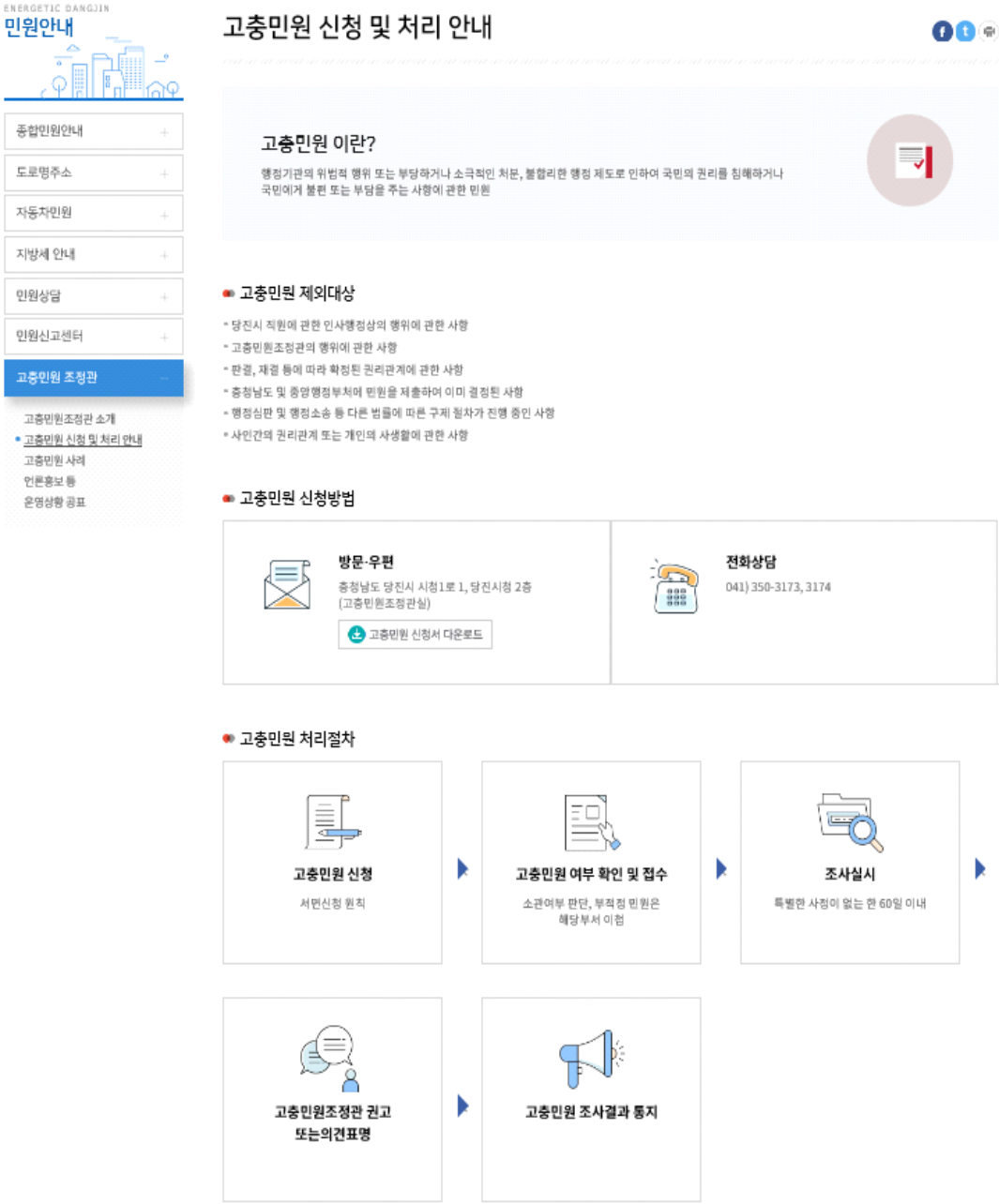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충민원조정관 안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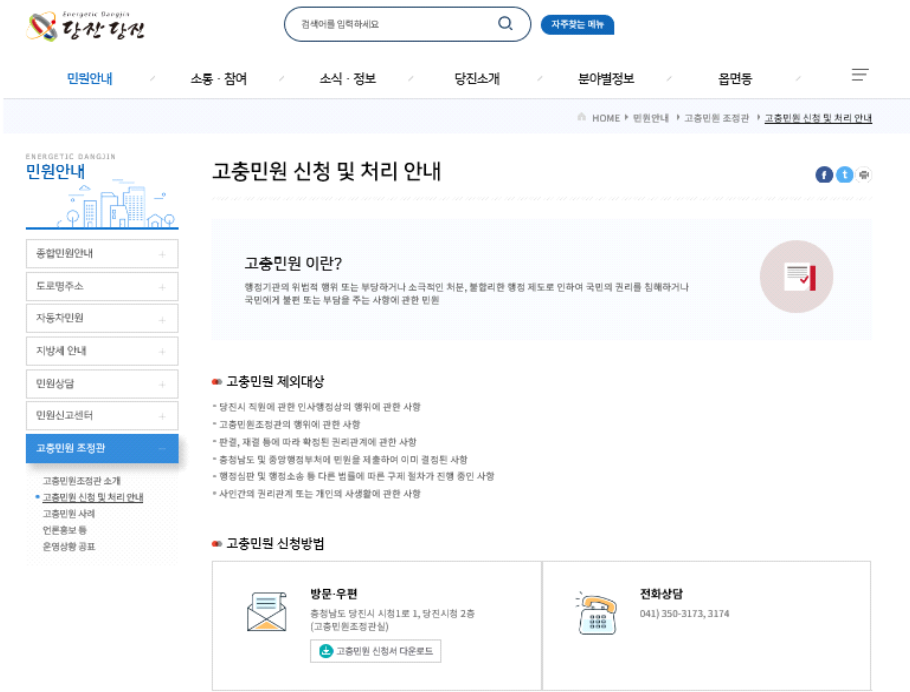

□ 민원분류 및 조사여부 결정

● 고충민원조정관 직무 범위 및 권한

관할 범위	직무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조사 및 처리 · 고충민원조정관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당진시 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사실시

-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 연장 가능)
- 고충민원의 조사는 당사자의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 병행

□ 조사결과 통지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고 수용

제도개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심의안내(긍정/부정/절차안내)

심의 결과, 긍정, 부정, 절차 안내로 분류
절차안내는 소관이 아닌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

이송·각하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이송하는 건
(담당과에 참조)

종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

5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홍보

□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 게재

● SNS채널, 당진사랑 시정소식지, 시청 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

(당진시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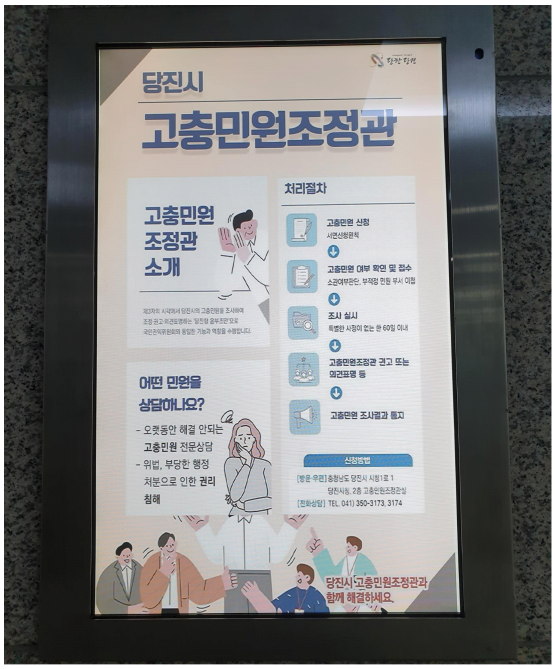

(시청 내 미디어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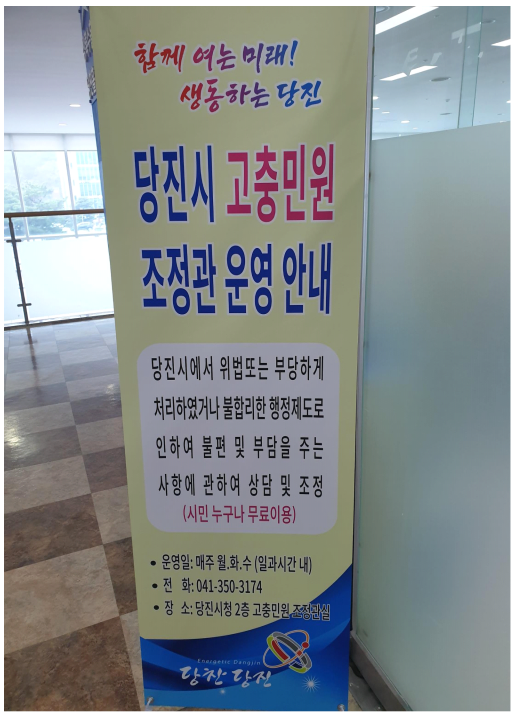

(고충민원조정관 홍보 배너)

□ 당진사랑 소식지 홍보

충청남도 당진시
www.dangjin.go.kr
당진사랑
곁에 있어 든든~한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 제도
알아보기!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부당·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혹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당진형 옴부즈맨 제도 :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제도가 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을 고충민원이라 한다. 이들의 특징은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민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고충민원조정관은 이러한 고충민원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또는 조정·합의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기획 | 고충민원 조정관

www.dangjin.go.kr 충청남도 당진시

내 민원도 고충민원 일까?

• 제천시 백운면 도곡2리 마을하수처리 시설 대규모 증설 반대

: 도곡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은 인근 3개 마을의 오폐수를 통합 확대 처리하고자 처리용량을 5배로 증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에 따라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천시 조정관은 처리 시설의 위치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폐쇄하는 방향으로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양 측 모두의 합의를 얻어내었다.

•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태양광발전시설 대규모 추진 반대

: 대호지면은 주민 대부분이 쌀농사를 주로하는 농업 지역이나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이 허용되었다. 허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고충민원조정관은 수용성 조사 대상지역, 주민투표 방법, 갈등관리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 제정을 당진시에 권고하였으며, 유사사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침 제정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이와 같이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시민과 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관 위촉에는 공모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 전문가를 배치하여 더욱 믿을 수 있다. 단, 고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 인사행정, 고충민원 담당관의 행위, 판결, 재결이 확정된 사항, 도 및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결정된 사항, 이미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사인 간 혹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처리대항에서 제외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2층에 마련된 고충민원조정관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실 • 운영일시 : 매주 월, 화, 수 (9:00 ~ 18:00)
041) 350-3173, 3174

옴부즈맨(Ombudsman)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일을 한다.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게시

- 게시위치: 시 청사 민원실, 고충민원조정관 사무실
- 제작수량: 8,000부
- 규　　격: A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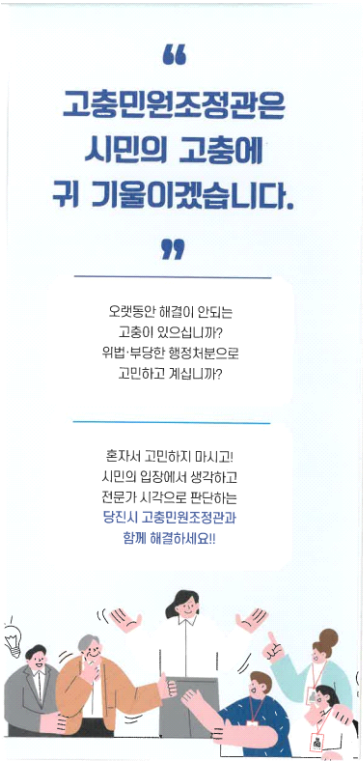

고충민원 조정관 소개

제3자의 시각에서 당진시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권고·의견표명하는 '당진형 옴부즈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충민원조정관이 하는 일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조정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과 조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 반복,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및 조정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고충민원이란?

행정 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조사 제외대상

-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서면신청원칙

↓

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소관여부판단, 부적정 민원 부서 이첩

↓

조사 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

고충민원조정관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

신청방법

[방문·우편]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2층 고충민원조정관실
[전화상담] TEL. 041) 350-3173, 3174

□ 고충민원조정관 홍보 볼펜 제작

- 제작수량: 4,000개

□ 고충민원조정관 사무실 현판 및 안내문 설치(당진시청 2층)

□ 고충민원 신청 안내

ENERGETIC DANGJIN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도로명주소
자동차민원
지방세 안내
민원상담
민원신고센터
고충민원 조정관
고충민원조정관 소개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고충민원 사례
언론홍보 등
운영상황 공표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행정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우편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2층 (고충민원조정관실)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전화상담
041) 350-3173, 3174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서면신청 원칙
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소관여부 판단, 부적정 민원은 해당부서 이첩
조사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고충민원조정관 권고 또는의견표명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

II. 고충민원조정관 활동 현황

1. 고충민원조정관 이동신문고 운영
2. 고충민원 현장 방문 활동
3. 국민권익위원회 협력 활동

II. 고충민원조정관 활동 현황

1 고충민원조정관 이동신문고 운영

가. 기획안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이동 신문고 운영 계획(변경)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고충민원조정관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행정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 및 중재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

1 추 진 방 향

❍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는 고충민원 이동조정실 상담 창구 운영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 및 불편사항 해소

❍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권고·의견을 표명하는등 시민과 행정간의 이견을 조정 중재.

2 추 진 계 획

❍ 기　존: 2022. 7. ~ 12. / 년 4회

❍ 변　경

- 기간: 2022. 9. ~ 12. / 년 2회
- 장소: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외
- 대상: 당진시민 누구나

❍ 운영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 각종 회의시 또는 홍보물 배포를 통한 사전 홍보 및 상담 접수처리.
- 고충민원조정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의 고충민원 상담.
- 상담후 인용된 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 결과 통보

※ 2022. 7. ~ 8. 중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미 운영

3 세 부 계 획

❍ 운영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운영인력	비 고
1회차	2022.09.19.(월) 10:00~17:00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고충민원조정관 외1명	송악읍민 및 시민 누구나
2회차	2022.11.03.(목) 10:00~17:00	미정	고충민원조정관 국민권익위원회	당진시민 누구나

※ 2022.11.03.(목)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예정인 당진.예산.서산(3개시군)권역별 "달리는 신문고"를 당진시에서 운영예정으로 "달리는 신문고" 운영시 병행운영.

❍ 처리절차

고충민원 상담 신청	방문, 우편, 유선 신청
⇓	
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소관여부 판단, 부적정 민원 부서 이첩
⇓	
민원조사 실시	▸ 신청인,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련자료 및 의견 요청 ▸ 민원현장 실지조사 ▸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연장가능)
⇓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소속행정기관에 결과 통지
⇓	
이행실태 점검	고충민원조정관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이행 촉구 등)

❍ 제외사항

판결, 재결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접수하여 결정된 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등 진행중인 사항, 사인간의 권리에 관한사항, 고충민원조정관이 상담후 인용하지 못하는 사항 등.

4 참 고 사 항

❍ 2022년도 송악읍 정기감사 기간중(1일/상황에 따라 연장가능)시민 누구나 신청가능.

❍ 2회차는 2022. 11. 03.(목)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당진,예산,서산(3개시군)권역별 "달리는 신문고" 운영시 병행운영. 끝.

나. 운영보고

2022년도 고충민원조정관 이동신문고 운영보고

송악읍으로 직접 찾아가는 고충민원조정관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시민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등을 상담 및 해소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중재하고자 운영 함.

Ⅰ 추진현황

○ 송악읍에 찾아가는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상담창구 운영

Ⅱ 추진일정

○ 기　　간: 2022. 09. 19.(월)10:00~17:00
○ 장　　소: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내
○ 상담대상: 고충민원 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민원인
○ 운영방법
- 고충민원 조정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의 고충민원 상담후 인용시 60일 이내 결과 통보

Ⅲ 세부추진계획

○ 사전에 마을이장 회의시 홍보 및 팜프렛 배포등을 통하여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린후 운영 완료.

Ⅳ 운영현황

○ 송악중·고등학교 통학관련 애로사항 접수후 내부 검토중.　끝.

다. 홍보

●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내 로비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로비 앞)

라. 송악읍 고충민원 주민 상담

9.19(월) 송악읍 주민 상담

2 고충민원 현장 방문 활동

가.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 조사('22. 1. 4)

지반침하 사고조사에 관련한 의견 청취(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지반침하 사고조사 관련 조정회의 개최(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남권 세미나

2022. 06. 27. 권위위 주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남권 세미나(당진시 사례 발표)

3 국민권익위원회 협력 활동

가.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 행사목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장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수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일　　시: '22. 5. 26.(목) 14:00~16:00
- 장　　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아산 분원)* 이벤트홀(지하 1층)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11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참　　석: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민원 조사업무 담당자 등
  ※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6): 충청남도, 충북 제천시, 영동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 내　　용: 민원사례 발표, 주요 홍보·상담·조사활동 사례 발표 등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례 발표가 총 3건 미만일 경우 우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사례 발표로 대체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1	1′	개회	아산시 옴부즈만
14:01~14:05	4′	참석자 소개	
14:05~14:10	5′	인사말씀	협의회 의장
14:10~15:40	90′	민원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사례	담당 사무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별 1개 사례 발표
15:40~15:55	15′	주요 홍보·상담·조사활동 사례 발표	아산시 옴부즈만
15:55~16:25	3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방안 토론 및 정보 공유	참석자 전원
16:25~16:30	5′	총평 및 당부사항	민원조사기획과장

-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진행 사진**

나. 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 일 시: '22. 7. 20.(수) 14:00~16:00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지하1층)
- 참석자 : 총 39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7명)
- 내 용

- 공동 부의장 선출(조상혁 전북도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 추진상황 설명

- **제3차 권위위원회 전국협의회 회의사진**

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일　　시 : '22. 11. 03.(목) 10:00 ~ 16:00
- 장　　소 : 당진시청 2층 상록수홀
- 시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당진시 운영)
- 대　　상 : 당진시민, 서산시민, 예산군민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상담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사진**

III. 고충민원 처리결과

1. 2022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제도개선 권고 사례
3. 심의종결 사례
4. 절차안내 사례
5. 이송 사례

III. 고충민원 처리 결과

1 2022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고충민원 접수현황

합계	방문	전화	우편	권익위 및 감사법무담당관실 연계처리
30건	25	2	1	2

-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2022. 1. 3.부터 2022. 12. 31.까지 **총 30건**의 고충민원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 접수 경로별 현황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83%**를 차지하고 있음

나. 분야별 접수 현황

합계	건설도시국	경제환경국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농업기술센터
30건	16	6	4	3	1

- 접수 분야는 **건설도시국 민원**이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환경국 민원**이 **6건**을 차지하고 있음(자세한 민원 내용은 심의종결 사례를 참조 바람)

다. 고충민원 처리현황

합계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심의종결			절차안내	이송 및 각하	조사중
			합의 조정	긍정 안내	부정 안내			
30	-	2	2	11	4	8	1	2

-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제도개선 권고** 2건 및 **당사자 간 합의조정** 2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종결한 **긍정안내**가 1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 고충민원 조사결과, 민원 신청인의 요구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안내** 종결이 4건, 소송 등 **기타 권리구제 절차안내** 8건임
- 해당 민원을 직접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송**처리한 것이 1건임

2 제도개선 권고 사례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제도 개선 권고	1	1.4 (채○○)	○○○면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조정 요청	신청인은 ○○○면 ○○리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사업허가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해당 마을주민 동의를 70% 이상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반대대책위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 우세 주장 등 찬·반 비율의 상이한 결론 등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동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당진시가 해당 읍·면·동에 수용성 조사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대상지역을 특정화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장이나 특정 개인의 선호에 따라 수용성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패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지 해당 마을과 타 마을에 대한 조사방법이 특정화되지 않아. 주민참여형 지원범위와 주민협동조합구성 시이익환원의 갈등발생 소지가 있으며, 산업자원통상부의 공고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초기 단계의 지역수용성 조사에서 모든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없고, 발전허가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절차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허가 단계에서 사업지 이외의 해당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수용성조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함.	기후환경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제도 개선 권고	1	1.4 (채○○)	○○○면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조정 요청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1. 수용성 조사와 관련하여 진행과정에서 편파적 또는 불법적 요소 및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업주가 갈등조정을 당진시에 요청할 경우, 당진시의 판단에 따라 당진시와 해당 읍·면·동이 주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관리를 진행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2. 수용성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또는 객관적 위원회 구성)의 협조를 받아 주민투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및 방법, 선거관리 및 비밀투표 절차, 투표율(선거인명부 60% 이상)과 수용성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고, 3. 주민투표 대상지역 범위 설정은 사업지 해당 마을에 한정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기초로 인접마을 또는 해당마을 이외의 타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회에서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여 수용성조사에 부기하는 수용성조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권고함.	기후환경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제도 개선 권고	2	11.17 (김○○)	고발장 작성 역량강화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제도 개선	이전에 종결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관할 문제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조사 처리한 사안으로 당진경찰서에서는 그동안 당진시가 제출한 고발장의 형식과 고발내용이 부실하여 고발서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서류의 반송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자술서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재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당진시청의 고발업무가 지체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당진경찰서의 입장에서도 고발서류 미비 등으로 효율적인 수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소통부재로 상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파악되었는바, 당진경찰서와 상호 협의하여 당진시의 각종 고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함. 1. 당진시의 위법행위 고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고발장 작성업무와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가칭「위법행위 고발장 작성요령」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2. 교육과 병행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분야별 고발장 작성요령 업무매뉴얼을 당진경찰서와 협의하여 마련하며, 3. 이후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 고발서류의 점검 차원에서 결재 전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함.	자치행정과

3 심의종결 사례

가. 합의조정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합의 조정	1	3.31 (오○○)	상수도 이설공사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 경비 지불 요청	상수도 계량기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주택의 진입로가 훼손되었고, 공사를 시행하며 이후에 원상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자력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여기에 소요된 원상복구비용과 자재대금 금 645,988원을 당진시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임. 수도과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당진시의 공사시공업체가 이와 같은 약속과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시공사가 다른 공사 때문에 신청인 출입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해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공사와 신청인 간에 복구비용을 정산을 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고, 양 당사자가 60만 원을 지불하고 동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여 조사 중 해결(합의조정)로 민원을 종결함.	수도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2	4.13 (최○○)	지적재조사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원상복구	신청인의 주택에 대한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조정되었으나. 도면 확인결과 이웃집과의 불합리한 경계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지적도 경계를 예전의 지적선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임. 동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이미 경계가 확정되어 경계재조정을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행정소송을 통한 경계재조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택과 인접한 이웃집과 합의 하에 면적 변경 없이 지적경계선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측량하여 이전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동 민원을 합의 ·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함.	토지관리과

나. 긍정안내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긍정 안내	1	1.4 (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조속한 지정 요구	신청인은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및 삽교호 유역 일원에 대한 한국전력의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하여, 동 지역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환경부 협의와 고시절차의 이행을 요청한 시안으로, 그동안 피신청인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TF회의와 환경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2022. 1. 28.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 및 삽교호 유역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고시하였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대로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동 민원을 종결함.	기후환경과
	2	5.11 (장○○)	당진시 ○○선수 숙소 층간소음 대책 요구	당진시 ○○종목 선수가 합숙하는 숙소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위층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관리부서에 동 민원 사실을 주지시키고,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관리부서에 동 민원사실을 주지시키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관계자에게 안내하였고, 별도로 근본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리모델링 등 공사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동 민원을 종결함.	체육진흥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긍정 안내	3	7.5 (송○○)	○○면 ○○리 지적재조사 관련 지적 경계조정 요청	○○면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확정되어, 조정금 완납 등 사업이 종결되었으나,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건축물이 연접한 토지의 신청 외 소유자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고, 동 사실에 대하여 상호 간 다툼이 없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약 7평 정도의 토지매매에 구두 합의를 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 측에서는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 지적 경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동 사실에 대한 긍정안내를 통보하고 종결	토지관리과
	4	9.7 (김○○)	○○면 ○○리 축대안전점검 요청	신청인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 아래에 위치한 이웃집에서 지속적으로 축대 붕괴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바, 축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당진시 안전총괄과에 민원상황을 설명하고 우선 축대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육안점검을 실시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해주기로 하고 이에 동의하여 이와 같은 조치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함.	안전총괄과
	5	9.19 (윤○○)	○○ 중 · 고등학교 통학대책 요청	○○중 ·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대중교통 운행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생들이 하교를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신청을 신청함. 이에 대한 당진시청에서는 기존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 조정과, 순행운행을 조정하여, 기존보다 추가 탑승인원을 늘리고, 별도로 당진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 내용을 신청인에 결과를 통보하고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교통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6	10.4 (김○○)	사유지 내 하수관 등 무단설치 원상복구	○○○리 ○○○번지의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하수관거 및 도로 화단과 인도 등을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바, 배수관로가 신청인의 토지에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우수관로를 인접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고, 도로공사로 인한 화단과 인도의 사유지 침범 부분도 시정해 주겠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긍정안내로 종결함.	항만수산과 도로과
긍정 안내	7	10.24 (김○○)	행정문서 불법유출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요구	한국전력과 당진시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당진시청의 확정되지 않은 내부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이 소송에 사용한 내부 문건은 사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내부적으로 오가던 문서에 불과한 뿐, 당진시청의 공식적인 대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자문서 송부 과정에서 함께 첨부되어 유출된 사안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종결함.	도시과
	8	11.7 (김○○)	농기계 대여 배달서비스 제공요청	당진시에서도 다른 시·군과 같이 농기계를 대여할 경우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역으로 배달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주고, 동 제도에 한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였음을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농기계 이용 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민원을 종결함.	농업기술센터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긍정 안내	9	11.22 (윤○○)	과도한 기준요구 시정	산지전용과정에서 과도한 기준적용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산지적용 기준을 당진시에서 달리 적용할 수 없으나, 일차 허가에 대한 허가내용 변경안을 가지고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맹지로 인한 허가조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과 당진시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긍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산림녹지과
	10	12.14 (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차별 시정요구	신청인의 시부가 국가유공자 7급을 인정받았는데, 시부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같은 7급의 다른 유공자와 차별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청인 시부의 세부적 인적 사항을 기초로 전공상 인정의 종류를 조사해 본 결과, 전상군경 유족에 해당하여 이후에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고 민원을 긍정안내로 종결함.	사회복지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긍정 안내	11	12.19 (이○○)	세대별 수도계량기 신청요구	신청인은 빌라 단지(4층, 8세대) 내 수도요금 분쟁 등의 문제로 수도과에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신청을 하였으나, 이제까지 누수 및 민원발생 등의 핑계를 대며 시장의 방침을 받아 빌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진행 중에 피신청인이 조례를 잘못 해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즉시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신청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통보함에 따라,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조사 중 해결(긍정안내)로 종결함.	수도과

다. 부정안내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부정 안내	1	1.11 (김○○)	산지전용 기간 연장 재신청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 처분 취소 요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 효력의 상실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부당하니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신청에 대하여, 당진시 차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적용과 관련하여 달리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기간 내 연장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하고 민원을 종결함. 그러나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진시청이 허가자에게 기간만료 이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함 (현재 산림청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사전안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중임)	기후환경과
	2	3.14 (이○○)	수도계량기 이설 및 누수요금 감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상가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니, 수도계량기를 상가 내로 이설해 달라는 신청취지임. 이에 대해 조사한 바, 당진시에서는 최초 계량기 설치 시 당시의 수용가에서 지정한 곳에 위치한 것으로, 설치 후 이설할 경우는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그동안 발생한 누수요금은 공사 시행 후, 감면조치할 것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민원을 종결함.	수도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부정 안내	3	5.4 (김○○)	직권말소 차량에 대한 말소 해제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피해 보상	신청인은 사채업자에게 속아 본인 투싼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유○○ 외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본인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한 후, 직권말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체납세금을 12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음. 이후 동 대포차의 운행자가 천안시에서 동 차량을 부활등록을 하고 다시 제3자에게 차량을 명의 이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 차량을 부활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당진시에게 부활등록을 하며 의견조회 요청을 할 당시, 당진시 관계자가 잘못된 답변을 하여 동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이 해제되었다는 바,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임. 그러나 동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과 관련한 당진시 특별사법경찰 조사과정에서 대포차인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말소된 차량으로, 천안시에서 동 차량을 부활 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진시의 의견조회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고, 직권말소 해제가 부활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진시에서 직권말소를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의견제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부활등록 제도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신청인의 착오로 발생한 오해였고, 이 과정에서 당진시의 잘못한 점이 없음을 설명했고, 신청인도 자동차 부활제도의 절차를 이해하여 동 민원을 종료함.	교통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부정 안내	4	8.24 (조○○)	○○관광농원 산지전용허가 적용배제 요구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관광농원 개발을 함에 있어, 의제처리하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72조를 근거로 관광농원 사업시행기간 변경신청서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함. 산지전용팀과 농촌융복합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방문 실시결과, 신청인의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을 통보하고 민원을 종료함.	농식품유통과 산림녹지과

4 절차안내 사례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절차 안내	1	1.2 (송○○외 1인)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 조사 요구	한국전력이 당진시 부곡공단 내에서 시행하였던 지중화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보상요구 등에 대하여, 권익위와 협업 처리를 진행하였고, 권익위가 주관한 현장 조사 및 2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실시하였으나, 비상대책위에 속해 있지 않은 신청인 외 ○○산기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전력 측에서는 당진시가 관계법령에 의해 구성 ·운영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나타난 지반침하 피해범위에 대한 이견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한국토목학회에 그 피해범위에 대한 별도의 촉탁을 의뢰한 관계로, 더 이상 권익위가 주관하는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 신청인 측에서도 별도로 2022년 3월 4일에 한국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피해금액 산정과 관련한 소송 이외에 추가적인 굴착공사 진행 등을 위한 당진시 인허가 등에서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의 조정을 요청하여, 동 민원을 절차안내로 종결하고, 이후 계속해서 양 당사자의 상담과 조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지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절차안내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을 종결 처리함.	안전총괄과 건축허가팀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절차 안내	2	3.14 (김○○)	○○○○산단	○○○○산단 유수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조속한 추진요구와 관련하여 조사한바,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사업소와 기후환경과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이견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입장이 상이하게 때문에 향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근본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종결함.	시설관리 사업소 기후환경과
	3	4.5 (김○○)	세입자가 체납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건물소유주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취소 요구	건물 소유주인 신청인은 이전에 수도과장과 상수도요금 고지서상의 명의를 세입자로 변경하면, 이후부터는 건물소유주에게 체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그 당시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세입자로 바꾸었으나, 이후 세입자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건물이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세입자가 체납한 상수도 요금을 다시 건물소유자인 신청인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임.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제2항에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당시 민원상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실사용자에게 납부독촉 등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기계적으로 건물소유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니 먼저 요금고지서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체납독촉 등 체납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여 수도과에서 세입자에게 납부독촉과 압류절차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청인이 새로운 건물임대를 위해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민원을 종결함.	수도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절차 안내	4	7.26 (강○○)	○○화력 온배수 활용 해수담수화 사업관련 상담	신청인은 ○○화력 온배수를 활용하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준비 중인데, 해수담수화 작업을 거친 공업용수를 당진시와 수자원공사에 매매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직접 공업용수(○○제철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데,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충청남도에 신청하기 이전에 당진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고 싶다고 민원을 신청함. 그러나 동 민원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안으로, 고충민원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충청남도에 사전심사청구 전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절차안내를 하고 종결함.	수도과
	5	8.9 (강○○)	사유지 도로편입 보상요구	○○○면 2리 문화마을 조성 시 본인 토지 약 8평 정도를 본인 동의도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보상을 요구함.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동 지번은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즉시 보상은 어려우나, 현재 지적재조사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므로 올해 9-10월 경 설명회 개최 시 동 민원 내용을 의사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하여, 동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종결 처리함.	토지관리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절차 안내	6	8.17 (강○○)	긴급 생계급여 및 주거지원	신청인은 ○○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출소 후 당진시로부터 2022. 4. 28.부터 기초 생계와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았으나, 만 65세가 되지 않아 조건부 수급대상자로서 근로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자활에 참여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진포기서 제출로 급여가 중지된 상태로 생계지원서비스와 주거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사회복지과
	7	9.19 (김○○)	위법행위 고발업무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조치 요구	한국전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당진시청 업무담당자가 한국전력의 자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의도적으로 고발조치를 미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함.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가 고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 당진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등에서 제기하는 모든 고발건에 대해 자술서 등을 첨부하여 고발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당진경찰서의 요청에 맞추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을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에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고, 별도로 당진경찰서의 부적절한 고발서류의 반송과 자인서 첨부 요구 등에 대해서는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의 업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하여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절차안내로 종결함.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 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절차 안내	8	9.26 (김○○)	현황도로에 대한 통행로 확보 요구	신청인은 ○○면 ○○리 토지를 2006년 매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인접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손○○씨가 지금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본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휀스를 설치하여 농기계 등이 출입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임. 동 마을진입도로를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할 때 민원갈등 발생 지점까지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인접 국유지를 활용한 진출입로 개설은 신청인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안내로 종결함	건설과

5 이송 사례

처리 유형	연번	접수	신청요지	처리 사항	
				처리 결과	관련 부서
이송	1	2.9 (조○○)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불완전한 공지 및 동의 문제	지구단위계획 업무절차와 관련한 공지 절차와 이해 관계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동 신청 내용을 관련 부서에 이송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함	도시과

IV. 부록

1. 고충민원조정관 보도자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당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6.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IV. 부록

1 보도자료

□ 고충민원조정관 언론 보도자료

- 충남일보 등 9개 언론사

당진시, 당진형 옴부즈만 고충민원조정관제 운영

예산 홍성=대전CBS 김화영 기자 | 입력 2020. 12. 17. 16:51

0

당진시청 전경.

충남 당진시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2020년 12월 18일 (금)
지역 07면

당진형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도입

당진시가 위법 ·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 고충민원관 제도를 도입하기 된 목적은 당진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하는 고충처리 문제이 행정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분배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가 국가권익위에 요청을 하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으며 당진시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당진시의회 78회 정례회에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7월 중 운영을 목표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행정의 복잡 · 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3자의 시각에서 상담 · 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고충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을 하는데 있어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당진 이은성 기자

충청매일

2021년 08월 19일 (목)
지역 10면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공개 모집

다음달 3일까지 서류 제출

당진시가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고충민원조정관'을 다음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고충민원조정관의 주요역할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합의,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 · 처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다.

지원자는 서류를 다음달 3일까지 감사법무담당관(당진시청 8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소식 · 정보의 고시 ·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호기자

금강일보

2022년 01월 05일 (수)
지역 15면

당진시청 2층에 마련된 '고충민원조정관실' 개소식에서 (왼쪽부터)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 김홍장 당진시장, 최창동 당진시의회 의장, 윤영수 당진시의원, 안종순 감사법무담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진시 민간전문가가 고충민원 해결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당진시가 위법 ·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당진형 옴부즈맨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 · 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 · 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조병걸 기자 jbg@ggilbo.com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 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제정) 2020.12.30 조례 제864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법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350-317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조정관"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고충민원조정관

제3조(설치) 고충민원조정관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4조(기능)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
2. 고충민원조정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 · 처리
6.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고충민원조정관의 후임으로 위촉된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전문가 자문) 고충민원조정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8조(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추천을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당진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조정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보수)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직무 관할) 고충민원조정관이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12조(해촉)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겸직 등의 금지)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고충민원조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고충민원조정관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조정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고충민원조정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충민원조정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 소속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2. 시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장 소속하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직무관할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따르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에의 통보)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로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소속기관 등은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소속기관 등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은 그 조치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 고충민원조정관은 소속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충민원조정관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공표)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고충민원조정관에 대한 협조 · 지원

제27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인력 및 예산지원)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고충민원조정관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30]
(일부개정) 2021.11.30 규칙 제908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법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350-31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조정관) ① 고충민원조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
5. 그 밖에 고충민원조정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조정관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보수 등)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조정관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고충민원조정관이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2조(고충민원 조사결과의 통보) 고충민원조정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3조(조치의 통보)

① 고충민원조정관으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4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6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15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고충민원조정관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공인의 사용)

① 고충민원조정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조정관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당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당진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21.3.30.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 11. 30. 규칙 제308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9.15]
(일부개정) 2020.09.15 훈령 제107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법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350-3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진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당진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진시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규칙에 따라 감사를 받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규칙 제25조의 징계, 경고, 훈계, 주의 처분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대상자는 규칙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 규칙」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서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15.〉

④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의견 표명대로 이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15.〉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감사법무담당관,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회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법무담당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는 제11조에 의하여 심의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감사법무담당관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시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게, 훈계·주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등 평가시 기관장이 받은 경고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포상 등 기타 수혜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경우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행정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경우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하되,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 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한다.

제19조(기록관리) 감사법무담당관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처분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2. 01. 01 훈령 제2호〉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5.30. 훈령 제73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8. 14. 훈령 제88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 9. 15. 훈령 제10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22.8. 기준)]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1명(위촉 중)	2년(1회)	독임제
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4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	경 기 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7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서울 (17)	종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11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2		광진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3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14		성북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15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6		도봉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17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8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9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0		양천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제
21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2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3		동작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4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5		강남구	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6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27	대구 (3)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8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9		달서구	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0	인천 (3)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31		연수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2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3	광주 (3)	남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4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5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6	대전	대덕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7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38		북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9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0	경기 (17)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2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0명(상근+비상근)	2년(1회)	독임제
4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44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45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7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8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49		하남시	옴부즈만	4명(상근+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0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1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3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5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56		여주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8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6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9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0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61	충남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2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6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4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5	전남 (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66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7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8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9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70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22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보고서

2022년 12월 인쇄

2023년 1월 발행

발 행 인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당진시청 2층

전화번호 041)350-3174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kor/sub01_07_01.do